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1.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양방향 충전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보급 확대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문을 신설하고, 개정안에서 신설하고 있는 양방향 충전시설 설치 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일부 조문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수정함(안 제8조의3 신설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호 중 “사용하면서 충전시설로 방전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로 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보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방향 충전(충전과 방전을 말한다) 기능을 갖춘 전
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안 제11조의2제6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부터 제13항까지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각각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로 한다.

안 제13조 중 “제11조의2제7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11조의2제
6항”으로 한다.

안 제16조제1항 중 “제11조의2제10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11
조의2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의2제8항 및 제9항”
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1.2. (개정안과 같음)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 ----- ----- -----사 <u>용하면서 충전시설로 방전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u>	3. ----- ----- ----- -----사 <u>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u>
4. ~ 10. (생략)	4. ~ 10. (현행과 같음)	4. ~ 10. (개정안과 같음)
<u><신설></u>		<u>제8조의3(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보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방향 충전(충전과 방전을 말한다) 기능을</u>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 구역 등) ① ~ ⑤ (생략) <u><신설></u> ⑥ ~ ⑫ (생략) 제13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 2, 제10조, 제11조 제2항 및 <u>제11조의</u>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 구역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방향 충전(충전과 방전을 말한다) 설비를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u> <u>⑦ ~ ⑬</u> (현행 제6항부터 제12항까지와 같음) 제13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 ----- ----- -----<u>제11조</u>	<u>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 구역 등) ① ~ ⑤ (개정안과 같음) <u><삭제></u> <u>⑥ ~ ⑫</u> (현행과 같음) 제13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 ----- ----- -----<u>제11조</u>
---	---	---

<u>2제6항</u>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16조(과태료) ① <u>제11조의2제9항</u>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u>제11조의2제7항</u> 및 <u>제8항</u>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생략)	<u>의2제7항</u>----- ----- ----- ----- -----. 1. ~ 3. (현행과 같음) 제16조(과태료) ① <u>제11조의2제10항</u>--- ----- ----- ----- ----- -----. ② <u>제11조의2제8항</u> 및 <u>제9항</u>----- ----- ----- ----- ----- ----- -----.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u>의2제6항</u>----- ----- ----- ----- -----. 1. ~ 3. (개정안과 같음) 제16조(과태료) ① <u>제11조의2제9항</u>---- ----- ----- ----- -----. ② <u>제11조의2제7항</u> 및 <u>제8항</u>----- ----- ----- ----- ----- -----. ③ (개정안과 같음) 부 칙
---	---	---

<u>제1조(시행일) 이 법</u> <u>은 2026년 1월 1</u> <u>일부터 시행한다.</u>	<u>이 법은 2026년 1월</u> <u>1일부터 시행한다.</u>
<u>제2조(전기자동차 충</u> <u>전시설 등에 관한</u> <u>적용례) ① 제2조</u> <u>제3호의 개정규정</u> <u>은 이 법 시행 이</u> <u>후 판매되는 전기</u> <u>자동차의 경우부터</u> <u>적용한다.</u> <u>② 제11조의2제6</u> <u>항의 개정규정은</u> <u>이 법 시행 이후</u> <u>설치되는 전기자동</u> <u>차 충전시설부터</u> <u>적용한다.</u>	<u><삭 제></u>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98
----------	------

발의연월일 : 2024. 8. 1.

발 의 자 : 김성환 · 김정호 · 허성무
윤종오 · 백승아 · 박지혜
이소영 · 서왕진 · 권향엽
황정아 · 최민희 · 허영
김남근 · 김기표 · 차지호
복기왕 · 정진욱 · 김윤
위성곤 · 오세희 · 전현희
강경숙 · 김원이 · 김동아
이재관 · 남인순 · 김영배
박희승 · 정태호 · 양부남
문금주 · 김영환 · 박정현
이광희 · 윤준병 · 이재강
염태영 · 송재봉 · 박범계
문대림 · 임미애 · 박홍근
민형배 · 임광현 · 안호영
김태년 · 추미애 · 김용만
황명선 · 이기현 의원
(5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자동차의 정의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을 두어,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라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활용한 유연성을 확보하여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분산형 전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정적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충전시설을 매개로 전력망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간 전기를 주고받는 양방향 충전을 통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이용한 전력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를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면서 충전시설로 방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일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은 양방향 충전설비를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함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안 제11조의2제6항 신설).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양방향 충전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보급 확대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문을 신설하고, 개정안에서 신설하고 있는 양방향 충전시설 설치 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일부 조문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수정함(안 제8조의3 신설 등).

법률 제 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보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방향 충전(충전과 방전을 말한다)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8조의3(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보급)</u>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방향 충전(충전과 방전을 말한다)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